

대구예술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(제정 2021.08.19. 법인이사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세기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6장 제1절 제1관에 의거하여, 우리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기) ① 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 (심사위원장 및 직무)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운영 사항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심의에는 출석할 수 없다.

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연, 지연,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회피대상자로 지정 할 수 있다.

제5조 (심사대상, 심사기준 및 방법) ①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대상은 정년보장교원 신청 공고시 직위(급)가 교수일 때 심사대상이 된다.

단,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재직교원의 15%이내로 한다.

②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
1. 최근 6년간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2. 최근 6년간 교수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
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방법은 「교수업적평가규정」 중 교육업적 평가기준, 연구업적 평가기준, 봉사업적 평가기준으로 한다.

제6조 (회의록작성)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, 날인한다.

제7조 (간사)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협조의 요청) 심사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처 및 관련 교직원에게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타)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
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